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0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김태선·장철민·복기왕

이용우 · 정준호 · 한민수

허 영ㆍ이훈기ㆍ김태년

박홍배 • 이학영 • 이기헌

윤종군・박 정・김주영

김영배·박균택·김남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 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7호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 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
	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u>7</u> . ~ <u>9</u> . (생 략)	<u>8</u> . ~ <u>10</u> . (현행 제7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